

민원 인쇄 ✕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9-0725878
신청일	2026-09-16 16:39:03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민 권익위 정일연에게, "아파트 관리비 도둑 조직"에 대해 신고한다
내용	1. 빈번하게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의 핵심 수단은 '수의계약'(관리소장 멋대로 업자 선정하는 계약)이야 그 도둑질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토부는 수의계약 계약서 사본 공개([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및 거래대금 입증은 단 3가지(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카드 명세서)로 한정시켰어([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위 2 법조문만 감독하면, 도둑질 불가능. 즉 감독기관의 가담없이는 불가능해. 이쯤에서 얘기가 어떻게 흘러 갈지 짐작되지 않는다면, 머리 나쁜 자신을 탓해라 2.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의 관리소장 임상현은 수의계약서 사본을 2023.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어(* 증거는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eunpyeong10/) 그걸 근거로 은평구청과 국토부에 수의계약서 사본 공개, 즉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위반에 대하여 신고했더니 묵살하더라, 들여다 보니 은평구청 주택과 안산옥과 관리소장이 관리비 도둑질의 공범인 거야(https://seokgung.com/corrupt9.htm#03242026) 3. 하여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는데(2026.2.25일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goso) 은평경찰서는 지금 현재까지(2026.9.16일) 질질 시간 끌며 수사하지 않고 있어. 좀 더 들여다 보니, (1) 은평경찰서 서장 김현환 새-끼가 주차장법 및 불법건축물(무허가 카페 영업) 위반하고 있는데, 그 단속기관인 은평구청 김미경 쌍-년이 묵인해 주고 있고 (2) 그에 대한 답례로 은평경찰서는 은평구청의 관리비 도둑질에 대해 묵인해 주고 있는 거야. (3) 국민 권익 위하여 서로 감시 견제해야 하는 기관들이 "서로의 범죄 묵인하는 부당거래"로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에 공조하고 있는 거지. 4. 더 기막힌 건, 대검찰청 공무원 부패 장려부(가칭, 반부패부)의 주민철과 김진호 검사 새-끼들이야 (1) 은평구청 감독 의무가 있는 국토부 주택과의("도둑년 트리오" 수괴, 안선행 등) 범죄 가담을 은폐/비호하는 대전지검 송새봄의 위법행위를 방관하고 자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2)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의 부당 거래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뭉개고 자빠져 있는 거야(첨부자료) 서부지검의 김은성+서청원 검사 새-끼들은 이미 은평경찰서 서장 김현환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묻지마 불기소" 했거든(아파트 관리비 조직도 첨부). 자세한 설명 및 모든 증거자료들은 여기에 있어 ⇒ https://seokgung.com/corrupt9.htm "국민 권익 위한다"는 주둥이질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봐라
첨부 파일	국민신문고20270105west.pdf jojik.png
피민원인명	대검찰청,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피민원인 근무처명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국 주택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9-0811199
접수일	2026-09-18 13:04:25
담당자(연락처)	이희자 (02-351-7374)
처리에정일	2026-09-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9-30 17:58:16
처리결과(답변내용)	예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및 제4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외부 실태조사 위원이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구 주택과 이희자 주무관(☎ 02-351-7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한마디 더	
이희자 도둑년아 1. "국민 권익위 정일연에게, "아파트 관리비 도둑 조직"에 대해 신고한다"라는 제목 보이지 않냐? 국민 권익위 정일연에게 신고한 건데, 니가 정일연이냐? 왜 니가 나서서 개/헛소리하고 자빠졌냐? 2. 니네 은평구청 도둑질에 대한 신고이고 그 도둑질 주범 중 하나인 이희자 너 도둑년이 자신의 도둑질에 대해 심판/답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국민 권익위에 환송 조치해라, 이 도둑년아	